

인천지방법원 2021. 3. 10 선고 2020가단261188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2. 24

판 결 선 고 2021. 3. 1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① D과 피고들 등이 2019. 4. 16.경<인천 미추홀구 E 대 26.5㎡(이하 편의상 '이 사건토지'라고 한다)>에 관하여 맺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함과 아울러, ②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/10지분씩에 관하여 이 법원(⑩ 소관 : 등기국) 2019. 10. 7.접수 제3742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들의 형 또는 오빠인 D이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, 이른바 '채무 초과상태에서' 2019. 4. 중순경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공동상속인들 인 피고들 등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,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만 각 1/2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한 다음, 이에 따라 2019. 10. 7.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지분씩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객 관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, 을 2~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피고들이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른바 '선의의 수익자'였던 사정이 인정된다.

나. 결국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이 수긍되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.

판사 박관근